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2 호 2022. 7. 14.(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0호[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61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11
\bigcirc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63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11
\cup	물건성 탁자 국구 고시 제2022-165호[도시계획사설(도도 도도)-167호선 되 2개고선)사법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2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65호[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3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6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4
\bigcirc	욱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70호[곳유수면 접용·사용 허가 고시] ·····	15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공 고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56호[공시송달 공고]	16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60호[행정대집행 영장]	17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61호[행정대집행 영장]	19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62호[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공고]	21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64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81호[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41
0	울산광역시 일부개정조	북구 4례안	공고 입법	제2022-982호[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계고] ····	42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83호[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8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89호[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59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90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62
\bigcirc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93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i>7</i> 7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인)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지차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2022.4.1.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여 회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상위 법령 현행화 및 인용 조문 변경(제1조, 제5조 ~ 제8조)
 -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다. 관련 자치법규명 변경(제2조, 제7조, 제8조)
 - (당초) 직무대리규정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인)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5조제1항 중 "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생활안정 사업자금 융자 한정 대상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욱 폭넓게 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안정 사업자금 융자 대상자 결격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제3조제2항제2호)
- 나.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제5조제1항)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인)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2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공무직"이란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 및 운반, 기타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반장" 및 "특별감독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관할구역 청소 업무를 총괄하고 환경공무직의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며 청소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예비운전원"이란 환경공무직 중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청소차량을 우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 7. 14.(목요일)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소통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2. 1. 1.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존 ' 주민소통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주민소통담당관'에서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제18조제2항)
- 나. 그 밖에 자치법규 규정 방식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제2조, 제12조,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70-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 나. 명 칭: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소3-231, 소1-3호선) 도로개설 사업
- 3. 사업규모: 도로개설 L=452.0m, B=6.0~8.0m

	당초	변경
연장/폭원	L=452.0m, B=6.0~8.0m	L=452.0m, B=6.0~8.0m
 면적	A=6,876.8 m ²	A=6,832.6 m 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명세서와 같음
-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4,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사업 나. 명 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 3. 사업규모(면적변경)

┌ 당 초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70 m²

└ 변 경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69 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020. 6. 11. ~ 2025. 6. 1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65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하천법」제30조제5항(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하천공사 명칭 : 상안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변경없음)
-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환경관리공단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3. 하천공사의 목적(변경없음)
- 하천 내 용도폐지된 횡단구조물의 철거, 여울조성 등 시범사업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수질 개선하고자 함
- 4. 하천공사의 위치(변경없음)

가. 위치 : 상안천(달천동 892-1번지 일원)

나. 면적 : 3,677 m²

-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 2022. 3. ~ 7. 12.
 - (변경) 2022. 3. ~ 9. 30.
-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자

(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6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화봉로 113	연암동 287-5	2022. 7. 14.	건축물 멸실
정자1길 82	정자동 704-1	2022. 7. 14.	건축물 멸실
원연암1길 10-8	연암동 794	2022. 7. 1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7.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7. 20.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통신용 콘크리트 전주 3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1215-23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1) 일시: 18m²

2) 계속: 0.589m²

나. 기 간

1) 2022. 7. 20. ~ 2022. 7. 30.

2) 2022. 7. 31.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산지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약수천)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7. 14. ~ 2022. 7. 28.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	무단점유현황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H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78-54번지	미상	미상	불법경작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10-3번지	미상	미상	불법경작	6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7. 28. (목)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2-96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5월 3일, 제2022-605호로 불법 경작물을 2022년 5월1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북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	정대집행 책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네밥왕 날이	소속	직위(직급)	성명	왕경네협왕 미중(구인력)
2022년 7월 28일	건설과	시설6급	노선화	550,000원 이내

2022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시설6급

성 명: 노선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2년 7월 7일, 제2022-960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2-9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5월 3일, 제2022-605호로 불법 경작물을 2022년 5월1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북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	성대집행 책임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네밥성 날이	소속 직위(?		성명	88대급왕 미중(구인탁)	
2022년 7월 28일	건설과	시설6급	노선화	550,000원 이내	

2022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시설6급

성 명: 노선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2년 7월 7일, 제2022-961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7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62호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공고

보

공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을 발 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대회개요

- 대회명 :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제안대회
- 일시/장소 : 2022. 8. 27.(토) 14:00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참가자격 : 연령 및 거주지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모둠(4명 이내)
 - 연령 : 2004년 8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2016년 이전 출생 아동까지
- 거주지 :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또는 북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진행방식 : 예선(1차) → 본선(2차)
 - 예선(1차) : 접수된 정책제안서 서면평가
 - 본선(2차) : 정책제안 발표 및 심사(7개 팀 내외)

2. 정책제안 주제 :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

-----< 정책제안 분야 >----

- 6가지 아동친화도 분야
 - ① 놀이와 여가
- ② 참여와 시민의식 ③ 안전과 보호

- ④ 보건과 사회서비스 ⑤ 교육환경

⑥ 주거환경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정책제안서 1부(3매 이내), 정책제안서(요약본) 1부

- 제출방법 : E-mail 제출(ehdrjf0621@korea.kr)

※ 본선진출 확정팀은 발표자료(PPT형식) 추가 제출

4.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100점 만점 기준

- 심사기준 항목 : 공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혜대상, 내용의 충실성 ※ 본선대회 심사 시, 발표준비 및 전달력 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 심사방법

- 예선 : (서면평가) 제출된 자료를 심사기준에 따라 내부 자체 평가

- 본선 : (심사위원회 및 아동평가단) 대회 당일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5. 시상내용

구분	시상	표창(훈격)	시상금
합계	3개팀		50만원
최우수	1	북구청장	25만원(상품권)
우수	1	북구청장	15만원(상품권)
 장려	1	북구청장	10만원(상품권)

6.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정책제안 접수	2022. 7. 18.(월)~7. 29.(금)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제출)
본선진출팀 발표	2022. 8. 5.(금) 예정	개별 통보(7개 팀 내외)
본선진출팀 사전교육	2022. 8. 13.(토) 예정	대면/비대면 병행 진행
본선진출팀	2022. 8. 22.(월) 한	발표자료 미제출 시
발표자료(PPT) 제출	2022. 8. 22.(월) 인	본선참가 불가
	2022. 8. 27.(토) 14:00	모둠당 발표 5분 이내
정책제안 발표대회	2022. O. 27.(도) 14.00 (북구 평생학습관)	(심사위원회 및
	(국구 청생익급선)	아동평가단 평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정책제안서는 반드시 아동 모둠에서 직접 작성된 자료여야 하며, 교사·부모 등 대리 작성 발견 시 제출된 자료는 무효로 함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 및 타 경연대회, 공모전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제안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8. 문의처

- 북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드림 (☎ 052-241-7678)
- 붙임 1. 아동정책 제안대회 참가신청서 1부.
 - 2. 아동정책 제안대회 정책제안서 1부.
 - 3. 아동정책 제안대회 정책제안서(요약본) 1부.

곳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참 가 신 청 서

팀명			대표 -	이름	
1 11 7				주소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연락처
n - .					휴대전화 : E-mail :
모둠 구성원 (4명 이내)					휴대전화 : E-mail :
					휴대전화 : E-mail :
					휴대전화 : E-mail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신청 건에 대한 팀별 식별과 아동정책제안대회 신청 요건심사, 평가 후 평가결과 알림, 신청대상 특성 확인을 통해 차기 아동정책제안대회의 효율적인 홍보방안 수립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 이메일, 주소, 단체명, 대표명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해지 요청일 까지(단, 별도의 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5년 경과 후 삭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및 삭제 요청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경우 신청 건에 대한 식별 불가로 인해 심사가 불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알림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모둠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정책제안서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정 책 제 안 서

제안제목			
팀 명			
정책제안분야	□ 놀이와 여가 □ 보건과 사회서비스	□ 참여와 시민의식 □ 교육환경	□ 안전과 보호 □ 주거환경
제안개요	※ 작성방법 1.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2. 휴먼명조 크기 13pt, 줄간격 160%, 3장 이내로 작성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작성 시 고려사항] - 정책 제안 배경(현황 및 문제점) • 제안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인가를 확인 후,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점 •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 수정사항 등이 가능한지 생각해본다. • 정책제안(실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문제)인지 생각해본다.		
제안내용	- 제안하는 정책(프로그램 (정책 내용, 실현방법,		및 방법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 -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		
기타			

『제4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정 책 제 안 서(요약본)

제안제목				
팀 명				
정책제안분야	□ 놀이와 여가 □ 보건과 사회서비스		□ 안전과 보호 □ 주거환경	
정책제안서 요약				
제안개요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작성방법 정책제안서 주요내용	<i>을 1<mark>장</mark>으로 요약하여</i> 3	<i>작성</i>	
제안내용				
기대효과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을 규정하던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 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 개정(안 제4조)
 -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 관련 근거법령 변경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 상향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 : 7년 동안 100분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 경감 → 15년 동안 면제(100분의 100 감면)
 -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 : 7년 동안 100분의 50,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30 경감
 - → 10년 동안 100분의 50 경감

3. 관계법령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의2
-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 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8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부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부과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521, 팩스번호 : 052)241-7509
- 3) 전자우편(E-mail): you33@korea.kr

6.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 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0 기 리 어 기] 보그 그게 키며 크레 이번레키크레이어 이번세크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

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무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 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 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 징한다.

-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 터 15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 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 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 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 건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생략)
-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생 략)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생 략)
 - <u>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u> 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 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2. (생략)
- ④ ~ ① (생 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 는 경우
-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④ ~ ⑦ (생 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략)
-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 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 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 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 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 ③ (생략)
-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

공

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⑤ (생략)
-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 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 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 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 ⑨ ~ ⑪ (생 략)
-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다.
 - <u>가.</u>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 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각각 감면한다.
 - <u>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u> 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생략)

③ ~ ⑱ (생 략)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 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 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④~⑥(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81호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85호 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던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38-3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

나. 명 칭: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

- 3. 사업규모 : 공원 조성(면적 : 8,640 m²), 건축물(연면적 : 443.6 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기간 : 2021. 8. 26. ~ 2022. 4. 30.
-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홍과 (☎052-241-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22년 8월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 축하금의 적용례 부칙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안 별표 1)
- 나. 장수 축하금 지급 첫 해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안 부칙 제2조)
-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8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2) 전화번호 : 052)241-7663, 팩스번호 : 052)241-7669
- 3) 전자우편(E-mail) : kn8406@korea.kr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j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울산 북구 실버케어 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 북구	ं ग्रोचोलो । व	コ スカマウョ	107(スパに)	
실버케어센터	출산성역시 국	구 중산공업로	10/(궁산궁/	

조례 제1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수 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수 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노인복지시설	일의 명칭 및 소재	즈] (제14조제2형	· 관련)	<u>노인</u> !	복지시	<u>설</u> 의 명칭	및 <i>소</i> 조	위기 (제14조제2학	항 관런)
명 칭	소 재	지	비고	명	칭		소 재	지	비고
울산 북구 노인복지판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	118길 40(호계동)			북구 복지관	울신광역시] 북구 동	대8길 40(호계동)	
울산 북구	울신광역시 북구 새쟝	-12길11(염 포동)			북구 관분관	울신광역시	북구새?	E12211(GES)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u>중</u>	산동 253번지			북구 <u>어센터</u>	울산광역시	<u> </u>	광호 167(중년)	
	부	<u> </u>				부		칙	
<u> <신 설</u>	<u>!></u>			제23	돈(장	수 축하	하금에	관한 적	용례)
				<u>제</u>	11조	제3항지	레2호의	의 규정에.	도 불
				<u>구</u>	하고	장수	축하	금 지급 >	<u>첫 해</u>
				<u>에</u>	한	해 주민]등록	상 100세	이상
				의	장	<u>수 노</u>	<u>인에 7</u>	게도 적용	한다.
				<u>다</u>	만,	이 경우	구 구	청장은 장	<u>수 축</u>
				<u>하</u>	금 >	지급을	2022년	년 12월 3	1일까
				지	완료	문하여이	냐 한□	<u> </u>	
<u>제2조</u> (생	략)			제33	<u>돈</u> (현	변행 제	2조와	같음)	

2022. 7. 14.(목요일)

공

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2. 1. 13.시행) 및 「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제정('22. 1. 13.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회 심의대 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회 심의대상 중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조제2항)
- 법제업무 담당부서(장) 명칭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9조)
 - : '기획예산담당관' → '법제담당 부서(장)'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praise34@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하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의선제물자	주 소					
개정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	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의회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호"로,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일전까지 기획예산

담당관실"을 "3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회부"를 "제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각각 "법제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혅 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 제1조(목적) -치법 시행령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 심의회(이하 <u>"심의회"라</u>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 ② ----- 각 호----심의·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4호는 필수 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2. -----공포안 <단서 신설>
-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 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 건에 관한 사항
- 4. (생략)
- 5. 예산·결산안, 기타 구 의회 5. ----- 그 밖에 -----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

개 정

1	1 企	(一	(円)				<u> </u>	<u> </u>
	법	시	행링	형」 제	28 <i>፭</i>	<u> </u>	따라	울
	<u>산</u>	광역	시	북구	조	례규	·칙심의	<u> 의회</u>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u>심의회는</u>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u>울산광역</u>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 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

시 북구청장-----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1. (현행과 같음)
 - ----- 다만,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 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삭 제>

- 4. (현행과 같음)

공

- 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6. <u>기타</u> 심의회에 심의 ·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의장등) ① (생 략)

- ② 의장은 심의회의 <u>회무를 통할</u> <u>하고</u>,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이 <u>사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u>사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u>기획예산담당관</u>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 ②·③ (생 략)

제7조(의안제출) ① (생 략)

-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u>당해</u>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

 6. <u>그 밖에</u>
 제4조(의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무를 총괄</u> <u>하고</u>
 ③ <u>부득이한 사유로</u>
<u>부득이한 사유로</u>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u>법제담당 부서의 장</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2
<u>해당</u>
(3)

공

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u>3일전까</u> 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u>의하여</u>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u>기획예산담당</u> 관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u>기획예산담당관</u>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u>기획예산담</u> 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u>심의회의 사무를</u>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③ (생 략)

제15조(회의록) ① (생 략)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구청

3 <u>일 전</u> 까지 법제담당 부서
 (4)
<u>따라</u>
<u>제출</u>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u>법제담당 부서의</u> <u>장</u>
<u>법제담당 부서의 장</u>
<u>법제담당 부서</u> <u>의 장</u>
제14조(간사) ① <u>의장은 심의회의</u>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②・③ (현행과 같음)제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②
따라

보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 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한다)할 수 있다.
 - 1. 2.(생 략)
-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 략)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청구취지 및 이유
- 3. 연서주민수
-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5. 이의신청 방법
-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 ·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 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는 규칙안
-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② · ③ (생략)
- ④ <u>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u>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989호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우리 구 신명동151-8번지(신명천) 일원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 후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보관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공고사항 : 행정대집행 보관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 2. 공고기간 : 2022. 7. 14. ~ 2022. 7. 28.(14일간)
-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4. 물품 내역 및 사진 : 붙임 참조
- 5. 보관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151-8번지(붙임 참조)
- 6.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84)
- 7.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공고 후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우리 구에 귀속, 폐기처분 됩니다.

붙임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물 보관대장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공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물 보관대장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물 보관대장

재산관리청: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 장소	® 취급자 성명	9 비고
1	텐트	EA	1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2	텐트	EA	1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3	텐트, 이불	EA	4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텐트1, 이불3
4	텐트, 텐트살	EA	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텐트1, 텐트살1
5	돗자리	EA	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6	목침, 청소도구	EA	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목침1, 청소도구1
7	후라이팬, 휴지	EA	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후라이팬1, 휴지1
8	의자	EA	1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9	물건 적치판	EA	3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10	접이식 의자, 텐트살	EA	2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접이식 의자1, 텐트살 1
11	텐트살	EA	1	'22. 7. 12.	신명교 하부	신명동 151-8번지	시설8급 전민지	

□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명동151-8번지)



현 장 사 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보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칭,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복지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8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22. 7. 14.(목요일)

(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2) 전화번호 : 052)241-7672, 팩스번호 : 052)241-7669
 - 3) 전자우편(E-mail) : sodami19@korea.kr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2022. 7. 14.(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와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64-4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 상담 · 지도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 주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다.

-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액면제
 -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액 면제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100분의 50 경감
 - ④ 구청장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고,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 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u>"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u> <u>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u>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 ④ (생 략)
-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 1.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
- 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 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⑦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민간위탁의 목적
 -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 3. 위탁대상 사무
 - 4. 위탁기간
 - 5. 예산지원액
 -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 7.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0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효율적인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2. 비용추계 전제
 - 연도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및 울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적용
 - 인건비 : 매년 1.9%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운영비 : 1~2차년도 대비 3~5차년도 10%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보수 및 운영비 산정 내역서 【붙임1】참조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명,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5명으로 인건비 산출
 - 장애인복지관 예산 : 인건비(시 100%), 운영비(구 100%) 주간보호센터 예산 : 인건비(시 100%), 추가운영비 등(구 100%)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 ,					•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비용(a-b)		-169,200	-169,200	-186,120	-186,120	-186,120	-896,760
세입	소계(a)	1,178,820	1,200,967	1,224,855	1,247,851	1,271,284	6,123,777
	시비보조금 (인건비)	1,165,620	1,187,767	1,210,335	1,233,331	1,256,764	6,053,817
	시비보조금 (운영비)	13,200	13,200	14,520	14,520	14,520	69,960
세출	소계(b)	1,348,020	1,370,167	1,410,975	1,433,971	1,457,404	7,020,537
	시비보조금 (인건비)	1,165,620	1,187,767	1,210,335	1,233,331	1,256,764	6,053,817
	시비보조금 (운영비)	13,200	13,200	14,520	14,520	14,520	69,960
	구비 (취운영비등)	169,200	169,200	186,120	186,120	186,120	896,76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조진희

공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레안 재원조달계획서(제10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합계		1,348,020	1,370,167	1,410,975	1,433,971	1,457,404	7,020,537
시비	일반회계	1,178,820	1,200,967	1,224,855	1,247,851	1,271,284	6,123,777
구비	일반회계	169,200	169,200	186,120	186,120	186,120	896,76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시비 및 구비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조진희(241-7692)

붙임 1

보수 산정 내역서

1.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2. 산정기준 : 연도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및 울산광역시 장

애인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적용

(2022년 인건비 지원금액 × 1.9%)

구 분		2023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계		1,165,620,370			
인건비	소 계	789,720,000			
	기본급	656,202,60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명) 관장(20호봉, 1명) : 4,727,960×12월 = 56,735,520원 사무국장(17호봉, 1명) : 4,249,640원×12월 = 50,995,680원 팀장(3급 10호봉, 5명) : 2,861,460원×12월×5명 = 171,687,600원 팀원(4급 3호봉, 13명) : 2,104,850원×12월×13명 = 328,356,600원 관리직(3호봉, 2명) : 2,017,800원×12월×2명 = 48,427,200원 (관리직 : 운전기사, 조리사) 		
		133,517,400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5명) - 사회복지사(4급 5호봉, 5명) : 2,225,290원×12월×5 = 133,517,400원		
	소 계	189,219,220			
수 당	가족수당	38,880,000	 1,440,000원×27명 = 38,880,000원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12월 = 720,000원 		
	명절휴가비	78,972,000	。 78,972,000원 (27명)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초과근무수당	58,407,220	 58,407,220원 (27명) 월급여(통상임금)/209×1.5×10시간 		
	자격수당	12,960,000	。 480,000원×27명 = 12,960,000원		
	소 계	186,681,150			
4대 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0,904,510	 4대 보험료(27명): 100,904,510원 건강보험료율 3.495%, 고용보험료율 1.55% 산재보험료율 0.75%, 국민연금료율 4.5% 		
	요양급여 4,198,220		。 요양급여(27명) : 4,198,220원 。 요양급여 12.27%		
	퇴직적립금	81,578,420	。 퇴직적립금(27명) : 81,578,420원 。 (기본급+수당)/12		

운영비 산정 내역서

1. 산정기준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적용

공

2. 산정내역

7 H	2023년 기준			
구 분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182,40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62,000,000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3,000,000원 공공요금, 수용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102,000,000원 사업비: 57,000,000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3,200,000	。 운영비 월 1,100,000원×12월 = 13,200,000원		
주간보호센터 추가운영비	3,600,000	∘ 추가운영비 월 300,000원×12월 = 3,600,000원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급간식비	3,600,000	∘ 급간식비 월 15,000원×20명×12월 = 3,600,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9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대상 시상부문을 세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야별 대 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대상 시상부문의 세분화 (안 제2조제1항)
- 나. 구민대상 심사기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2,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시	나항에 대힌	<u></u> 의견	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¹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 1 C - 1 E / 1	주 소				
개인정보취급		제15조제1항(개인]보를 제공할 것을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북구 구민대성 이 의견을 제출하		정조례안」	의 입법예고	에
11-11 11-1 E) ⁻ C 근 / 기근 \	- - - - - - - -			
	2022	년 월 일	<u>]</u>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u>)</u>])
울산광	역시 북구청장	거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구민대상 시상부문을 세분화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대상 시상부문의 세분화 (안 제2조제1항)

나. 구민대상 심사기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7월중

바. 입법예고 : 2022. 7. 14. ~ 8. 3.(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효행·봉사·교육·환경"을 "지역사회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산업·경제·문화·체육"을 "주민화합·봉사·효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3. 교육·문화·체육 부문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심사기준) 제2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편익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경우
- 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3.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한다)"를 "구"로 하며,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 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 1. 지역사회발전 ----2. 산업 · 경제 · 문화 · 체육 부 2. 주민화합 · 봉사 · 효행 ---문 <신 설> 3. 교육·문화·체육 부문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 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 <u>는</u>다. <신 설> 제2조의2(심사기준) 제2조의 부문 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 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

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

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

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낸 경<u>우</u>

제3조(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제3조(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 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 속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 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포함 한다.

② (생략)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만 20세 이상의 구민(단, 지 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 3. ~ 4. (생 략)
- ② (생략)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교육·<u></u>문화·<u>체육 부문"</u> 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 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사 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으로서 ---------- 7---------- 사람은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 ~ ③ (생 략)
-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 | ④ -----지식과 덕망이 있는 <u>자</u> 중에서 ----- <u>사람</u>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 ⑧ (생 략)
-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 2. 그 밖에 -----고 인정하는 예우

- ~ ③ (현행과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제10조(수상자의 예우) -----

- 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